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 외국인 [] 장애인 [] 그 밖의 특화운영 대상 *상담소를 외국인 또는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소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